

[별표 5] <개정 2005.8.5, 2006.6.29, 2007.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 상 시 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100	100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100	100
라.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100	100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100	100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100	100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100	100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차.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0	50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100	100
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중 도로	100	100
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50	50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내 동법 제7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0	100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00	100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0	100
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시설	0	50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100
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50	50
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마목, 사목 내지 하목, 처목 내지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50	50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100	100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중 공공편익시설	0	100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100	10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100	100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50	50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법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 상 시 설	감면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농로 및 농업용수로·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	100
(2) 농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초지의 조성	0	100
(3)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0	100
(4)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0	100

사설납골시설을 말한다)		
(5)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100	100
(6)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도서관	100	100
(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50	50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100	100
(10)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100	100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으로 한다)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100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100	100
---	-----	-----

※비고 : (1)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